

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219
------	-----

2018. 12. 17.
기 획 경 제 위 원 회

I 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년 10월 17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8년 10월 29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】

-제10차 기획경제위원회(2018.12.17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II . 제안설명의 요지(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)

1. 제안이유

가. 서울시는 2014년부터 「민간 운영기관이 투자자로부터 선(先) 투자를 받아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사업을 먼저 시행하고, 사

업 종료 후 서울시와 약정된 성과 기준에 따라 투자금 등을 상환받는 사회성과보상 사업」을 추진 중에 있음.

- 2018. 10월 현재 「경증지적장애 및 경계선지능 아동들의 학습 능력 향상」을 위한 1호 사업(민간에서 11억 1천만원 선투자) 추진 중.

나. 청년 실업문제 완화를 위한 신규 프로젝트 추진을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민간 재원 및 사업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(사업 완료 후 성과에 따라 원금 및 이자 보상)을 도모하고자

- 「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」 제6조 제1항에 따라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(2호사업) 추진에 대한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미리 얻으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추진근거 : 「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」

나. 추진경과

- 2017. 10월 「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성과보상사업(SIB) 아이디어 경진대회」 참가 요청 (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-990, '17.10.26.)
- 2017. 12월 「SIB 아이디어 경진대회」 신청서 제출
 - 「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」 추진
- 2017. 12월 「SIB 아이디어 경진대회」 심사결과 및 시상계획

통보(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-1749, '17.12.27.)

- 서울시 우수상(행정안전부장관상) 수상, 시상금 8천만원(SIB 추진에 활용)
- 2018. 3월 「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SIB 사업모델 개발 용역」 추진
- 2018. 8월 「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SIB 사업모델 타당성 검증 용역」 추진

다. 사업개요

- 대 상 : 만19세~만34세 청년 취업취약계층 500여명
- 성과지표 : 국내·외 취업자 수 또는 창업자 수

- ▶ 취업 : 주40시간 근무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취업
(아르바이트, 초단시간 근로자 등 단기성 일자리 및 공공근로는 제외)
- ▶ 창업 : 자격증 취득을 전제로 한 창업

- 사업수행기간 : 3년
- 총 사업비 : 3,000백만원 (성과보상 인센티브 별도)
 - 사업수행비 2,540백만원, 운영비 360백만원, 평가비 100백만원
- 성과측정 : 평가기관이 1년 단위로 성과목표 달성 인원 수 측정
 - ※ 성과 측정의 투명성·명확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·운영기관·수행기관이 1년 단위로 대상인원을 확정하여 프로그램 진행
- 운영기관 공모방법 : 제한경쟁입찰

라. 추진 필요성

- 서울의 청년실업률은 2018년 3분기 기준 11.3%로 전 연령 실업률(4.9%) 대비 2배 이상 높고 전국 평균(9.4%)을 상회함.
 - 청년 실업이 지속될 경우, 개인의 소득감소로 인한 경제 문제를 넘어

기업의 인력구조 왜곡 및 생산성 저하와 건강·출산·사회불신 등의 심각한 사회 요인이 될 수 있음.

- 새로운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을 사회성과보상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성과 재원을 확보하고 신규 일자리 프로젝트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.

※ 효과성이 담보되지 않아 재정 투입 및 전면적 시행이 어려운 혁신적 일자리 창출프로그램에 대해 SIB 연계시, 민간 재원과 전문성 확보 가능
▶ 신뢰할수 있는 성과평가기법을 통해 민간 선투자로 실시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의 효과를 객관적 평가하고 성공시 프로그램 전면 확대

Ⅲ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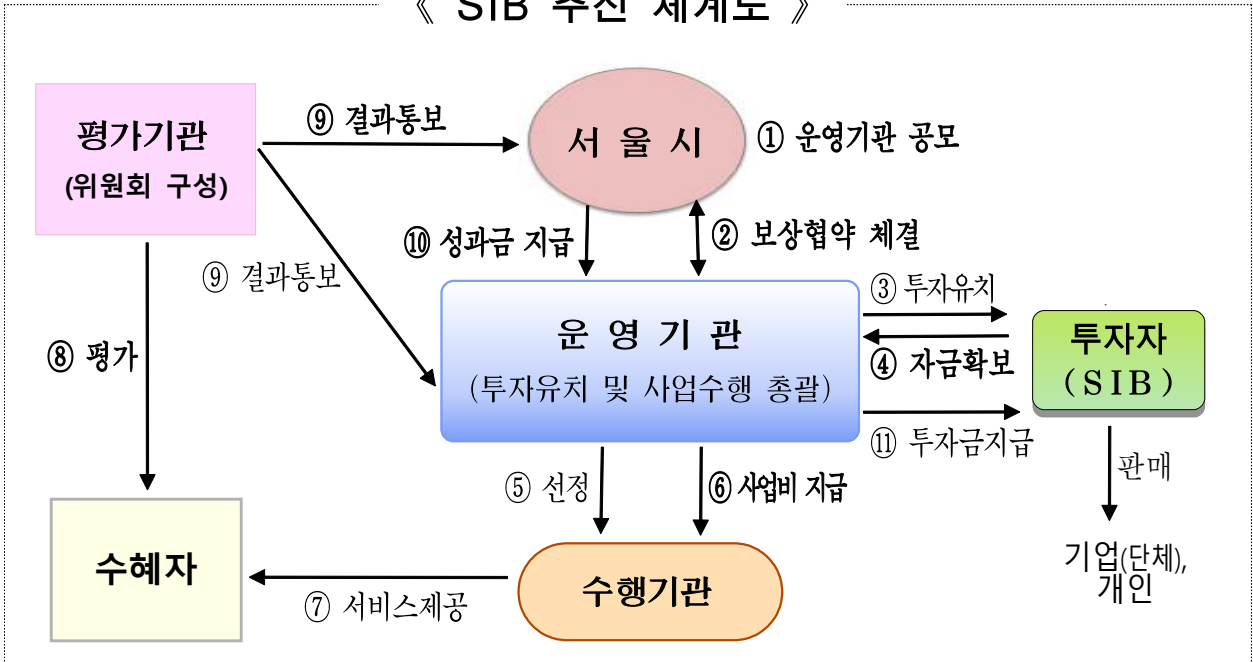
가. 동의안의 개요

- 동의안은 서울시가 청년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2호 사회성과보상 사업을 추진하고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.

나.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개념 및 현황

- 사회성과보상사업(SIB, Social Impact Bond)은 범죄, 실업, 빈부 격차, 환경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셜투자의 한 형태로, 민간 운영기관에 정책 과제를 위탁한 후 목표달성 성과에 따라 사업비와 성과금을 지급하는 투자 방식임.

《 SIB 추진 체계도 》



- 2010년 영국에서 처음 시행된 이 사업 방식은 정책 성과를 거둘 때만 예산을 투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공의 입장에서는 행정비용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, 투자자는 사업 성공 시 성과금까지 돌려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.
- 서울시는 2014년 아시아 최초로 사회성과 보상사업을 제도화하고 1호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증지적장애·경제성지능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치유와 사회성·학습능력 향상 등의 자립지원 사업(2016.8~2019.8)을 진행 중에 있음.
 - 1호 사업은 팬임팩트코리아가 운영 중이며, 사업 성공시 사업비와 인센티브로 최대 13억 9천 1백만원을 보상할 예정임(사업비 10억 7천만원).[참고자료 1]

다.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타당성

-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2호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만 19세~34세의 취업취약계층 청년 500여명을 대상으로 3년간 시행될 예정이며, 총 사업비는 약 30억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.

〈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개요〉

- ▶ 대 상 : 만19세~만34세 청년 취업취약계층 500여명
- ▶ 성과지표 : 국내·외 취업자 또는 창업자 수
 - 취업 : 주40시간 근무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취업
(아르바이트, 초단시간 근로자 등 단기성 일자리 및 공공근로는 제외)
 - 창업 : 자격증 취득을 전제로 한 창업
- ▶ 사업수행기간 : 3년
- ▶ 총 사업비 : 30억원 (성과보상 인센티브 별도)
 - 사업수행비(프로그램) 2,540백만원, 운영비 360백만원, 평가비 100백만원
- ▶ 성과측정 : 평가기관이 1년 단위로 성과목표 달성 인원 수 측정
 - ※ 성과 측정의 투명성·명확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·운영기관·수행기관이 1년 단위로 대상인원을 확정하여 프로그램 진행
- ▶ 운영기관 공모방법 : 제한경쟁입찰

- 서울시의 청년실업률은 11.3%¹⁾로 전 연령 실업률(4.9%)보다 2배 이상 높고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어,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.

1) 2018년 3분기,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

-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목표로 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부문의 자본과 창의성,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에서 재정 여건이나 사업효과성 미검증 등의 이유로 도입하기 어려웠던 혁신 사업들을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.
- 이번 사회성과보상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「SIB 아이디어 경진 대회」(2017.12)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어, 사업효과에 대한 기대가 큼.
- 한편 해외의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살펴보면, 일자리 관련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, 영국의 청년 니트족²⁾ 취업능력 향상 사업이나 네덜란드, 독일의 청소년 실업률 감소 사업 등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통해 취업 성과를 달성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[참고자료 2].
- 다만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사업이 기존 공공에서 제공되던 청년 실업 정책과 차별화되고 독창적이며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됨.
- 이밖에도 향후 성과 평가에 있어 국내·외 취·창업자 수를 성과지표로 선정한 바, 서울시와 사업 운영기관, 평가기관 모두가 동의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평가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.

2) Not in Education, Employment or Training
일하지 않고,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

- 한편 1호 사업 진행시 민간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어 사회성과 보상사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참석위원 7명,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

의안 번호	21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10월 17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'14년부터 「민간 운영기관이 투자자로부터 선(先) 투자를 받아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사업을 먼저 시행하고, 사업 종료 후 서울시와 약정된 성과 기준에 따라 투자금 등을 상환받는 사회성과보상 사업」을 추진 중에 있음
- '18. 10월 현재 「경증지적장애 및 경계선지능 아동들의 학습능력 향상」을 위한 1호 사업(민간에서 11억 1천만원 선투자) 추진 중
- 나. 청년 실업문제 완화를 위한 신규 프로젝트 추진을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민간 재원 및 사업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(사업 완료 후 성과에 따라 원금 및 이자 보상)을 도모하고자
- 「서울특별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조례」 제6조 제1항에 따라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(2호사업) 추진에 대한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미리 얻으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추진근거 : 「서울특별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」

나. 추진경과

- '17. 10월 「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성과보상사업(SIB) 아이디어 경진대회」 참가 요청 (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-990, '17.10.26.)
- '17. 12월 「SIB 아이디어 경진대회」 신청서 제출
 - 「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」 추진

- '17. 12월 「SIB 아이디어 경진대회」 심사결과 및 시상계획 통보
(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-1749, '17.12.27.)
 - 서울시 우수상(행정안전부장관상) 수상, 시상금 8천만원(SIB 추진에 활용)
- '18. 3월 「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SIB 사업모델 개발 용역」 추진
- '18. 8월 「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SIB 사업모델 타당성 검증 용역」 추진

다. 사업개요

- 대 상 : 만19세~만34세 청년 취업취약계층 500여명
- 성과지표 : 국내·외 취업자 수 또는 창업자 수

- 취업 : 주40시간 근무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취업
(아르바이트, 초단시간 근로자 등 단기성 일자리 및 공공근로는 제외)
- 창업 : 자격증 취득을 전제로 한 창업

- 사업수행기간 : 3년
- 총 사업비 : 3,000백만원 (성과보상 인센티브 별도)
 - 사업수행비 2,540백만원, 운영비 360백만원, 평가비 100백만원
- 성과측정 : 평가기관이 1년 단위로 성과목표 달성 인원 수 측정
 - ※ 성과 측정의 투명성·명확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·운영기관·수행기관이 1년 단위로 대상인원을 확정하여 프로그램 진행
- 운영기관 공모방법 : 제한경쟁입찰

라. 추진 필요성

- 2017년 서울의 청년실업률은 10.1%로 전 연령 실업률(4.5%) 대비 2배 이상 높고 전국 평균(9.8%)을 상회함
 - 청년 실업이 지속될 경우, 개인의 소득감소로 인한 경제 문제를 넘어 기업의 인력구조 왜곡 및 생산성 저하와 건강·출산·사회불신 등의 심각한 사회 요인이 될 수 있음

- 새로운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을 사회성과보상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성과 재원을 확보하고 신규 일자리 프로젝트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

※ 효과성이 담보되지 않아 재정 투입 및 전면적 시행이 어려운 혁신적 일자리 창출프로그램에 대해 SIB 연계시, 민간 재원과 전문성 확보 가능
▶ 신뢰할수 있는 성과평가기법을 통해 민간 선투자로 실시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의 효과를 객관적 평가하고 성공시 프로그램 전면 확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조례 제6조(보상사업의 동의)

① 시장은 채무부담행위 성격의 보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시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운영기관에 지급할 성과보상을 지급년도 예산에 편성

- 예산과목 : 일반보상금-사회성과보상금(301-11)
- 예산 : 30억원(성과보상 인센티브 별도)
- 예산지급 : 보상계약에 따른 성과 기준에 따라 원금 및 인센티브 보상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노수임(☎2133-5482)